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례 제4427호(2010. 4. 26)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중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율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수도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통상진흥원 등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2)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함(안 제3조)

- 다. 보조금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근거 조문을 신설함(안 제3의2)
- 라. 보조금 규모, 이자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 1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설치하는 시설 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3.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제3조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을 “제2조의2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인”을 “7인”으로,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의 결정 등) 시장은 매년 보조금 규모·이자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보조금의 사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지설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설치하는 시설 자금</u> ----- ----- ----- ----- ----- -----.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u>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u> 중 방지지설설치자금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u>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u>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u>한국환경공단</u>으로부터 <u>융자금</u>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 ----- ----- <u>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u> ----- ----- ----- -----.
<신 설>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u>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한국환경공단법</u>」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u>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u> 2.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u>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u> 3. 「<u>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u>」에 의하여 <u>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u>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u>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u>

현행	개정안
제3조(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u>한국환경공단</u>의 <u>환경개선자금</u> 용자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운영</u>한다. ④ (생략)	제3조(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제2조의2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7인</u> ----- ----- <u>구성·운영</u>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의2(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조금의 결정) 매년도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의 결정 등) 시장은 매년 보조금 규모·이자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생략) <신설>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의 준수사항 등) ○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악취방지법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세부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사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사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방지사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사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사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다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악취방지법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중소기업 환경개선 설비 투자에 따른 융자금중 이자 보조
-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
 -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배출업소 5,128개소 중 매년 500여업체 환경설비 투자
- 업체별 연간 최대 20백만원, 평균 8백만원 지원 추정

나. 추계 결과

- 지원대상 500개소 중 2014년까지 300개소 이자혜택 확대
- 년차별로 1,860백만원, 2,100백만원, 2,420백만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1], [붙임2]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박윤수

[붙임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지원환경개선 이자지원	1,860	2,100	2,420	2,420	2,420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860	2,100	2,420	2,420	2,420	
	일반회계	1,860	2,100	2,420	2,420	2,42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붙임2]

비 용 추 계 서

1. 자치법규 명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2. 소 요 비 용 : 연간 1,860백만원(600백만원 추가 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비 고
	2012	2013	2014	2015	
기업환경개선 이자 지원	1,860	2,100	2,420	2,420	2012년 예산 1,260백만원 반영

※ 근거자료 : 2011년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 지원 확대계획서를 근거로 작성